

3

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

(1)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(상증법 §3의2)

현 행	개 정 안
☐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<추 가>	☐ 납부의무자 추가 ① (좌 동) ② ①의 배우자

〈개정이유〉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'26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